# KB스타 전세자금대출(HF\_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대출



#### 대출자격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 \*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계산
  -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고객
  -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 이후 취득(상속 제외)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 하는 아파트(이하 "규제대상아파트"라 함)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 예외 인정 없음
  - 4.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 객
  -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가)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 (나)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 증(연말정산용)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 (다) 무소득자(무직자)
  - 6.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o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 업자'인 경우 쌍방계약도 가능
  -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 7.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배우자 소득합산 불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자격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신혼부부 또는 다둥이가구 대출대상에 해당한다.
  - 1. 신혼부부: 대출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 이 보증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2. 다둥이가구: 가족관계증명서상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당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예: 타행 상환조건부,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
  - (2)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에 의한 계약 인 경우
  - (3)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
  - (4)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
  - (5)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평가기관을 통해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대출 신청인 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 (6)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7)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 (8) 배우자가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9) 임대인이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결과, 추가확인사항 이행 대상자인 경우 (단, 추가확인사항 중 「추가서류징구·확인」 이행 대상자인 경우 취급 가능)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2억 2천 2백만원 이내
  - (신혼부부 또는 다둥이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2억원 이내)
  - \*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 능금액에 따름

#### 대출기간

-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산정하며,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이내로 한다.(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전세자금대출 | 스타뱅킹신청

### 상품안내

### 상품특징

•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 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신청자격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성 년인 세대주
  -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 \*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계산
  -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고객
  -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 이후 취득(상속 제외)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규제대상아파트"라 함)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 예 외 인정 없음
  - 4.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가)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 (나)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 (다) 무소득자(무직자)
  - 6.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ㅇ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인 경우 쌍방계약도 가능
  -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 건설㈜
  - 7.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배우자 소득합산 불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자격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다둥이가구 대 출대상에 해당한다.
  - 1. 신혼부부: 대출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이 보증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인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2. 다둥이가구: 가족관계증명서상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당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예: 타행 상환조건부, 임차목적물 선순위

#### 말소조건부 등)

- (2)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
- (3)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
- (4)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
- (5)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평가기관을 통해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대출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 (6)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7)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 (8) 배우자가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9) 임대인이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결과, 추가확인사항 이행 대상자인 경우 (단, 추가확인사항 중 「추가서류징구·확인」, 이행 대상자인 경우 취급 가능)

###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2억 2천 2백만원 이내
- (신혼부부 또는 다둥이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2억원 이내)
- \*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산정하며,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이내로 한다.(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시기

- \* 대출희망일(잔금일) 50일 전부터 11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 유형에 따라 아래 대출신청시기를 준용
  - (1)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2) 갱신계약: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에 의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가.대출희망일에 고객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여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다.(토요일, 공휴일 실행 가능) 단,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고 영수등 등으로 잔금 납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나.비대면 심사조직은 고객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다.(토요일, 공휴일 실행 불가) 단, 임대차계약 사실이확인되고 영수증 등으로 잔금 납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 우대금리:
-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미운영
- ※ 단, 신혼부부, 다둥이가구인 경우 '신혼부부/다둥이 협약 우대(연 0.15%p)'가 최초 도 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 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59%) × 잔존일수 ÷ 대출기간(최장 3년까지 부과)
  -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9%)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에 관한 사항

-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 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② 항'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용안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 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 원)	15만원 (각각 7만5천 원)	35만원 (각각 17만5천 원)

- ②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

###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일시상환대출: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3)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5) 혼합상환: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6) 통장자동대출: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 비대면 기한연장: 대출만기일로부터 1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하며 영업점에서만 기한연장
   을 신청할 수 있다
  - (1) 당행 수신계좌 미보유 차주
  - (2) 신용관리대상자 차주
  - (3)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중이거나 2020.07.10. 이후 규제대상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실수요 증빙을 통한 예외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4) 기한연장 시 피보증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마친 경우로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의 내용(임차보증금, 대항력 등)이 적정한 경우
  - (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기한연장 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기한연장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내로 함.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 적용금리 : 당초대출의 금리체계 적용

### 상품 가입채널

\* KB스타뱅킹

※ KB스타뱅킹 접속경로: 뱅킹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반환보증 >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신청시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단, 23:50 ~ 다음날 00:10까지는 전산점검 등으로 신청 불가)

###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 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 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 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
   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177-1호(2025.01.20)]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5.01.20~2027.01.10**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2017.07.1 4)	* 해당사항없음	* KB 스타뱅킹 이용고객 (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 (0.1%p)	미적용
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2017.07.1 4)	* KB 스타뱅킹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 스타클럽고객(골드스타이상)(0.1%p)	* 운용중단 * 운용중단 *현행 유지	미적용
우대금리 추가 (2017.07.1 4)	* 해당사항없음	* 부동산전자계약우대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 애인우대(0.1%p)	미적용
대출연체 가산금리 변경 (2018.04.2 7)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 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 가산이자율: 연 3%	적용
대출상환방법 (2018.10.1 5)	* 일시상환 적용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일시상환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18.10.1 5)	018.10.1 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미적용

		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 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 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 5)	* KB스타클럽(본인 은행 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 등급): 연 0.1%p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 금리: 연 0.1%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 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 등급):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연 0. 1%p	미적용
중도상환 수수료율 (2019.04.1 7)	* 0.7%	* 0.6%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경우 0. 7%적용	적용
대출신청시기 (2019.08.3 0)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 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 (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 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 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 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 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 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 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 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 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19.11.1 1)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 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 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 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 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미적용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부유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 취급가능)	
대출상환방법 (2020.06.0 5)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혼합상환(일시상환+원 (리)금균등 분할상환)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7.1 0)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 주택가액이 9억원이하인 고객.단, 보유주택 9억원초 과인 경우라도 실수요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 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 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 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 빙시 예외취급가능)	미적용
대출상환방법 (2020.10.3 0)	* 일시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원 (리)금 균등 분할상환) 분 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10%,20%,30% 중 선택	* 일시상환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분할 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 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 위)	적용
우대금리 (2020.11.0 6)	* 최고 연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 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 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 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p),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p),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기한연장 시 적용

대출계약철회 권 제외 대상 (2021.03.2 5)	*대상	*비대상	없음
우대금리 (2021.09.2 9)	* 우대금리: 최고 연1.2%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 0%p) -급여(연금)이체(0.30% 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 p)	* 우대금리: 최고 연1.0%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 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 0%p) -급여(연금)이체(0.30% 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1.10.2 7)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 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 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 (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 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 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 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 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 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 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2.01.0 3)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 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 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 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되는 고객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 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 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 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되는 고객	적용
우대금리 (2022.01.0 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 고 연0.7%p - 신용카드실적(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1.2%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 고 연0.9%p - 신용카드실적(0.10%p	미적용

	~0.30%p) - 급여(연금)이체(0.30% p) - 스타뱅킹실적(0.10%p)	~0.30%p) - 급여(연금)이체(0.30%p) - 스타뱅킹실적(0.10%p) - 자동이체실적(0.10%p) - 적립식예금실적(0.10%p)	
대출신청시기 (2022.03.3 0)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 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 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 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 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 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 월 이내 2.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 (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 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 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 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 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p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p),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우대금리 : 최고 연1.4% p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p),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연 0.3%p)	미적용
대출최고한도 (2022.10.1 1)	최고 2억2천2백만원	최고 2억2천2백만원(채권 보전조치 시 4억4천4백만 원) *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 2억2천2백만원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 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 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 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 빙시 예외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 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 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 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 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 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대출신청자격 (2024.09.3 0)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 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 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 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 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고객 *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 증금 계산	미적용
중도상환수수 료 (2025.01.1 3)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 환원금 × 수수료율(0.5 9%) × 잔존일수 ÷ 대출기 간(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 수료율(0.79%) 적용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5.01.2 4)	*(10) 증액 금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잔금일 이 후 신청한 갱신계약으로서 「DSR적용대상」에 해당하 는경우 *(1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 결과 추가 확인 사항 또는 심층 심사 대상 자인 경우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결과, 추가확인 사항 이행 대상자인 경우 (단, 추가확인사항 중 「추 가서류징구·확인」이행 대 상자인 경우 취급 가능)	미적용
대출실행(지 급)시기 (2025.01.2 4)	*대출희망일(잔금일)에 고 객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여 임 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 금한다. (토요일, 공휴일 실행 가능) 단,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고 영수등 등으로 잔금 납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 로 입금 가능하다.	*(가) 대출희망일에 고객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여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다. (토요일, 공휴일 실행가능) 단, 임대차계약사실이 확인되고 영수등등으로 잔금 납입사실이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나) 비대면 심사조직은고객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고객의 위임을 받아 계	미적용

좌로 대출금을 입금한다. (토요일, 공휴일 실행불가) 단,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 인되고 영수증 등으로 잔 금 납입사실이 확인된 경 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 능하다.

### 필요서류

- \*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2) 구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3)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지급사실의 확인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
  - (4) 대상목적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5)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6) 신청인 자격확인서류
  - (가)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나)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다) 무소득자: 사실증명원
  - (7) 기타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금융거래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분양권 잔금대출 확인시) 등
  - \* 발급은행 해당지점에 발급사실, 해당내용을 확인
  -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